

# 「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」 중점 확인 사항

※ 특히, 수동발급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,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

| 구분        | 중점 확인사항   |
|-----------|---|
| 인적공제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<b>중복공제</b> 및 <b>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</b>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(확인서 등)</li> <li>해당 과세기간 개시일(1.1) 전 <b>사망자·국외이주자</b>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</li> </ul>  |
| 주택자금공제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거주자(개인)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<b>세대주(세대원 가능) 여부</b> 확인</li> <li>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<b>입주일</b>과 주민등록표등본의 <b>전입일</b> 중 빠른 날부터 <b>전후 1개월 이내</b>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</li> </ul> </li> <li><b>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<b>세대주(세대원 가능) 여부</b> 확인</li> <li>등기부등본,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<b>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</b>, <b>국민주택규모 여부</b>(2013년 이전 차입분),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, 대출 계약기간이 15년 이상인지 여부,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 3억원) 여부,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<b>2주택 보유 여부</b>, 대출조건(비거차식, 고정금리 등) 확인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주택마련저축공제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<b>세대주 여부</b> 확인</li> <li><b>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</b> 확인</li> </ul>   |
| 신용카드 소득공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본공제대상자인 <b>형제자매의 신용카드</b>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</li> <li><b>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</b>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</li> </ul>   |
| 연금계좌세액공제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개인연금저축 납입액</b>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</li> <li>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<b>중도해지(공제 불가)</b> 또는 <b>본인명의 여부</b> 확인</li> </ul>   |
| 보험료세액공제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장성보험료의 경우 <b>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</b> 확인</li> </ul>   |
| 의료비세액공제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자 명의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</li> </ul> </li> <li>사내근로복지기금·보험회사(실손보험금)·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<b>보전받은 의료비</b>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 (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)</li> </ul>  |
| 교육비세액공제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(입학연도 1월~2월 까지)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</b> 확인</li> </ul> </li> <li><b>비과세 학자금</b>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<b>교육비 공제</b>를 제외하였는지 확인</li> <li>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(과세제외)를 제외하였는지 확인</li> </ul>  |
| 기부금세액공제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'일련번호' 유무 확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</li> </ul> </li> <li>기부금단체가 <b>적격 단체</b>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개별 종교단체</b>의 경우 <b>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</b>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, 법인설립허가증 사본,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</li> <li>'고유번호증'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</li> <li><b>사주, 구합, 택일,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</b>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</li> <li>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<b>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</b>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,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'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'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|
| 월세액세액공제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<b>세대주(세대원 가능) 여부</b> 확인</li> <li>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<b>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</b> 여부 확인</li> <li>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인지 여부 확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2014.1.1.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 받음 요건 삭제</li> </ul> </li> </ul>  |